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5 회계연도 실적]



거 제 시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I 성과분석제도 개요

1. 성과분석의 목적

-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를 객관적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
- 기금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기금정비 및 제도 개선에 반영

2. 성과분석의 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

II 성과분석 방향

1. 성과분석 대상기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
 - 2015회계연도 기준, 법정 의무기금 4개 포함 총 11개 기금 운용

2. 성과분석 방식

- 3개 분야(7개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100점), 가점(4점) 부여

분야	지표 항목	점수
기금 정비(50점)	기금정비율	35
	일몰제 적용률	15
기금 운용의 건전성(35점)	채권관리 적정성	15
	타회계 의존율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기금 운용의 효율성(15점)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10
	경상적 경비 비율	5
가 점(4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	3
	통합관리기금 설치	1

Ⅲ 성과분석 보고서 내용

1. 기금운용 개요

- 연혁,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2. 분석 결과

- 총평, 사업운영의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개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 설치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 설치연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121	1,192	371	821	5,942	1,017	799	21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추진내용	비고
	최초 계획	집행 실적	비율(%)		
이차보전	439	371	84.51	- 120개 업체, 371백만원 이차보전 - 63개 업체, 9,270백만원 융자지원	

○ 잘된 점

- 건전한 기금운용 : 고유목적 사업비 비율 100%, 경상적 경비 비율 0%
-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집행으로 수혜자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미흡한 점

- 일반회계 전입금 외 기금 재원 확보 곤란
-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사업비 증가

- 향후 조치계획
 - 기금의 일반회계 통합운영
 - 경기부진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확대에 따라 한시적 지원
- 기금의 존치필요성
 - 저금리 따른 이자수입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종의 경기부진에 따른 사업비 급증으로 기금 조성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에 통합운영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의 일반회계 통합운영 시 기금 폐지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8	184	92.93	439	371	84.5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이차보전사업(198백만원)	○ 이차보전사업(184백만원)	92.93%
'15년	○ 이차보전사업(439백만원)	○ 이차보전사업(371백만원)	84.5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용유발 및 지역 경기부양 효과가 큰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할 지역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기업지원 강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기금의 설치)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중소기업 용자지원에 따른 이차차액보전	84.51%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1998년 기금 조성 이후, 금융기관과 상호 협약을 통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94개 업체에 27,890백만원을 용자지원하고 1,432백만원의 이차보전을 지원함.
-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용자지원 및 이차보전사업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이차보전사업	439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안정적인 자금 확보 필요 - 다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종 경기 부진에 따른 이차보전사업비 증가로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통합운영 검토 필요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 조성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의 시 출연금을 통하여 자금 조성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804	100%	5,305	100%	6,313	100%
	전입금	500	10.41	500	9.43	1,000	15.84
	보조금						
	차입금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154	86.47	4,688	88.37	5,121	81.12
	예수금						
	이자수입	149	3.10	117	2.20	192	3.04
	기타수입	1	0.02				
지 출	합 계	4,804	100%	5,305	100%	6,313	100%
	비용자성사업비	116	2.41	184	3.47	371	5.88
	용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688	97.59	5,121	96.53	5,942	94.1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준치가 필요함
- 다만, 기금 일몰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일반회계 통합운영 등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일반회계 통합운영
검토·시행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市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
- 설치연도 : 2007년(조례 제662호)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048	90	55	35	3,083	53	42	11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지원 : 21개 단체(개인) 55백만원

○ 잘된 점

- 2016년까지 30억 조성이 목표액이나 2014년 말 기금조성 완료
- 기금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와 심의를 거쳐 지원금 및 지원대상 결정
- 지원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10%이상 확보토록 규정

○ 미흡한 점 : 소액 다건의 지원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비효율성 초래

○ 발전방향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정책 추진

○ 기금의 존치 필요성

-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으나 이자율 하락으로 지원 사업 축소 ⇒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금 폐지 후 일반회계로 편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9	131	94.24	66	55	83.3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39개 문화예술단체(개인) 139백만원 지원	37개 문화예술단체(개인) 131백만원 지원	94.24
'15년	27개 문화예술단체(개인) 66백만원 지원	21개 문화예술단체(개인) 55백만원 지원	83.3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
-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 행사의 성행
⇒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 제공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문화예술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市の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서예,공예등의 문화예술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관내 예술단체 및 개인의 신청으로 21개단체(개인) 55,100천원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14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목표액 30억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이자수입 80% 문화예술단체(개인) 활동에 지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기금 교부시 이행보증보험 미징구	결산검사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66,431천원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자금 적립 필요하나 일반예산 편성 지원가능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80범위 내에서 기금설치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시 재정 여건 및 기금의 이자율 하락 등 기금지원 목적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939	100%	3,180	100%	3,138	100%
	전입금	300	10.21	120	3.7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597	88.36	2,886	90.76	3,048	97.13
	예수금						
	이자수입	42	1.43	174	5.47	90	2.8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939	100%	3,180	100%	3,138	100%
	비용자성사업비	53	1.80	132	4.15	55	1.7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886	98.20	3,048	95.85	3,083	98.2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적립금은 2016년 일반회계로 전입 예정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원활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으로 저소득층 자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설치연도 및 조례제정일 : 2001. 12. 27.(조례 제426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653	67	8	59	712	70	110	△4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8백만원
- 잘된 점 : 자활사업 촉진을 위한 복지증진사업비 지원
- 미흡한 점 : 기금 용자 활용 실적이 없음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한 기금의 존치필요성 : 자활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활사업 수익금, 예금이자로 적정하게 조성되었고, 재원의 조성액 또한 5억원 이상으로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적립되어 있으며, 제한된 기금의 용도를 다양화하고 홍보활동으로 자활기금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0	9	8.18	110	8	7.2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용자사업 2개 (100백만원) ○ 복지증진사업 1개 (10백만원)	○ 용자사업 : 없음 ○ 복지증진사업 : 9백만원	8.18%
'15년	○ 용자사업 2개 (100백만원) ○ 복지증진사업 1개 (10백만원)	○ 용자사업 : 없음 ○ 복지증진사업 : 8백만원	7.27%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추진실적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자활지원사업 추진 자금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자립, 자활복지 증진 기여	○ 창업자금 용자지원 ○ 복지증진사업 추진	7%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용자실적은 없으며 복지증진 사업만 추진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소규모창업자금	100백만원	저소득 자활, 자립자금 지원의 신축적인 집행으로 독립성 유지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1년 이후로 수입재원은 시출연금과 이자 및 기타수입금을 적립하여 6억 이상을 확보하여 재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자금 운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융자신청이 들어와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을 6억 이상 확보하여 기금 이자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려고 하나 본 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며, 면·동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623	100%	662	100%	720	100%
	전입금					50	6.9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600	96.31	623	94.11	653	90.70
	예수금						
	이자수입	23	3.69	20	3.02	17	2.36
	기타수입			19	2.87		
지 출	합 계	623	100%	662	100%	720	100%
	비용자성사업비			9	1.36	8	1.1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623	100	653	98.64	712	98.8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 설치 및 조성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
 - 설치연도 : 1997. 7. 28.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80	140	35	105	1,585	125	35	9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 지원(35,000천원)
- 잘된 점
 -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활기차고 유쾌한 노후생활을 보장
- 미흡한 점
 - 일반예산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
- 발전방안
 - 기존 사업과는 별개로 특화되고 다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한 기금의 존치필요성
 - 노인복지기금은 최초 조성자금이 대한노인회에서 운영 중이던 노인회 육성자립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되었으며, 이후 시의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해지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	30	100	35	3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사업 (30백만원, 1개소)	○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사업 (30백만원, 1개소)	100%
'15년	○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활동운영비 (35백만원, 1개소)	○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및 활동운영비 (35백만원, 1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어르신들에게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킴
- 노인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노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거제시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 거제시 노인회보 발간 ○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 ○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	지적사항 없음	
	'14	지적사항 없음	
	'15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합 계	35백만원		
우수지도자 선진견학	4.5	노인활동 증대와 사회참여 기회의 효과가 있어 계속 존치 요망	상
우수분회 및 우수경로당 시상	2.5	"	"
도단위 게이트볼 행사지원	1.5	"	"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4.0	"	"
도단위 실버대회 참석	5.0	"	"
노인자원봉사활동	1.5	"	"
스포츠댄스 강사료	1.0	"	"
어르신 안전운전 스티커	3.0	"	"
경로당 역량강화 임원교육	1.0	"	"
지회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	3.0	"	"
노인회 조직 활성화	8.0	"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정기예탁금 : 1,573백만원 조성
- 보통예탁금 : 11백만원 조성(15년12월31일 기준)
-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씩 기금 적립금으로 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여가선용과 건강 증진 및 지역사회 봉사기회의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업 범위의 조정을 통한 융통성 있는 기금의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404	100%	1,510	100%	1,620	100%
	전입금	500	35.61	100	6.62	100	6.1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870	61.97	1,374	90.99	1,480	91.36
	예수금						
	이자수입	34	2.42	36	2.39	40	2.4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404	100%	1,510	100%	1,620	100%
	비용자성사업비	30	2.14	30	1.99	35	2.16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374	97.86	1,480	98.01	1,585	97.8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구.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 설치목적 :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문화 확산 등을 위한 정책 추진
- 설치연도 : 1998년
- 사업내용 :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재원조성 : 이자 수입 등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238	92	23	69	2,307	45	40	5	

II. 분석결과

1. 총 평

사업명	사업비 집행 실적			추진실적
	계획	집행	비율	
계	23,000	23,000	100	
여성폭력예방강사 양성교육	4,000	4,000	100	○ 기간 : 2015. 6. 9 ~ 6. 18. ○ 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 실적 : 참가자 30명 / 수료 28명
참 좋은 효(孝)사랑 생일상차리기	5,000	5,000	100	○ 기간 : 2015. 5. 16 ~ 11. 21 ○ 내용 : 조손 가정 및 부자세대 등을 위한 생일상을 마련해줌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및 건강 가정 육성에 기여 ○ 실적 : 40명 지원
꽃향기roman드는 행복 한 가족정원 만들기	5,000	5,000	100	○ 기간 : 2015. 5. 19 ~ 11. 21 ○ 내용 :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올바른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치료 및 의사소통 프로그램 진행 ○ 실적 : 7회 / 48명 참가
행복한시니어 힐링캠프	4,000	4,000	100	○ 기간 : 2015. 5. 1 ~ 11. 30 ○ 내용 :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요리법, 셀프코디법 등 건전한 여가활용법 프로그램 진행 ○ 실적 : 80명 참여

정이 통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	5,000	5,0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15. 5.25. ~ 11.2 ○ 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에게 빨래, 밀반찬 지원 등의 나눔 실천 ○ 실적 : 이불세탁 및 밀반찬지원 470세대
------------------	-------	-------	-----	--

○ 잘된 점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라는 성평등기금 사업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 미흡한 점

- 동일 단체 및 내용의 사업이 반복 신청 지원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사업 신청 실적 저조

○ 향후 조치계획

- 사업 공모시 사전에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노력

○ 기금의 존치필요성

- 거제시 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
- 기금의 존재 자체가 성평등 문화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0	38	76	50	23	4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가정폭력예방강사 교육 외 8개 사업 50백만원	○ 가정폭력예방강사 교육 외 8개 사업 38백만원	76%
'15년	○ 여성폭력예방강사 양성교육 외 4개 사업 23백만원	○ 여성폭력예방강사 양성교육 외 4개 사업 23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기관 및 단체 대상 회계실무 교육 실시
: 2015. 5. 1. 시청 소회의실 5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참석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거제시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성평등 사회 실현 - 여성의지위향상,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	75개 사업/ 353백만원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7년부터 현재까지 75개 사업에 353백만원 지원함
- 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로 하여금 각종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 내 양성평등 기반 조성 및 여성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성평등기금 사업	23백만원	- 거제시 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에 기여 - 기금의 존재 자체가 성평등 문화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지속적으로 존치 되어야 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은 2013년 기금목표액 20억 달성 이후 이자수입이 주된 재원 조달 방법이며, 지출은 이자수입금(매년 50백만원 안팎)의 범위 내에서 기금설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재원조성의 적정성이 우수한 편으로 중장기적으로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포함, 확대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분야 (일·가정 양립지원사업, 여성인권사업 등)에서의 사업을 공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2,281	100%	2,276	100%	2,330	100%
	전입금	200	8.7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006	87.94	2,223	97.67	2,238	96.05
	예수금						
	이자수입	75	3.29	52	2.29	91	3.91
	기타수입			1	0.04	1	0.04
지 출	합 계	2,281	100%	2,276	100%	2,330	100%
	비용자성사업비	58	2.54	38	1.67	23	0.99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223	97.46	2,238	98.33	2,307	99.01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 설치연도 : 1997년도
- 사업내용 : 시 출신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고등학교 우수, 대학입학 우수, 대학재학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금액 : 해당연도 장학금 지급 이전 발생한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지원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934	1,356	120	1,236	6,170	1,158	120	1,03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추진내용	비고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년 거제시 장학기금 지급	120	120	100	- 선발인원 : 105명 - 고등학생 : 50만원 - 대 학 생 : 200만원	

○ 잘된 점

- 수혜대상자를 늘여(91명→105명) 더 많은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 지급

○ 미흡한 점

- 지급대상의 단순화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 발굴 어려움

○ 향후 조치계획

-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금 적립금 확보 및 제도적 보완 장치의 검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6	141	96.58	120	1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장학금 지급 (146백만원, 97명)	○장학금 지급 (141백만원, 91명)	96.58%
'15년	○장학금 지급 (120백만원, 105명)	○장학금 지급(120백만원, 105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더 많은 인재 육성에 이바지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시 출신 우수 인재 육성 -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 2014년 장학금 지급 (141백만원, 91명) · 2015년 장학금 지급 (120백만원, 105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지역 출신 우수인재 622명에게 979백만 원의 장학금 지급하여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
 -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수혜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학기금사업	120백만원	- 장학사업 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될 경우 삭감될 우려 및 변동이 예상되므로 장학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존치 필요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은 2020년까지 기금목표액 100억 달성 이후 이자수입이 주된 재원 조달방법이며, 지출은 이자수입금의 80%범위 내에서 기금설치 목적 사업을 수행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적절하게 사업운용이 가능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4,537	100%	5,075	100%	6,290	100 %
	전입금	300	6.61	500	9.85	1,225	19.48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056	89.40	4,428	87.25	4,934	78.44
	예수금						
	이자수입	181	3.99	147	2.90	131	2.0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537	100%	5,075	100%	6,290	100 %
	비용자성사업비	109	2.40	141	2.78	120	1.9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4,428	97.60	4,934	97.22	6,170	98.0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거제시 장학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목표액 100억원의 조성을 위해 매년 10억원 이상의 출연금 지속 확보 및 이자 수입액의 범위 내 지출
- 이자수입액 중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을 재적립하여 재원의 안정성 도모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제13조
- 설치목적 :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 설치연도
 - 1995년 :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제정(목표액 30억)
 - 2014년 :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제정(목표액 50억)
- 사업내용 :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학교체육 및 우수선수 육성 등
- 재 원 :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존속기간 : 2023년 12월 31일
- 지원기준 : 연간 이자수입액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사용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53	303	72	231	3,484	294	78	216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추진내용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	73,400	72,180	98.34		
학교체육 육성사업	32,000	32,000	100	- 훈련지원비	
우수선수 육성사업	18,400	18,400	100	- 대회 출전 및 훈련비 지원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15,000	13,780	91.87	-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 입상자 포상	
생활체육 육성사업	8,000	8,000	100	-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 잘된 점

-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도 단위이상 체육대회 상위권 입상
- 학교체육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

○ 문제점 및 대책

-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비에 집행하므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사업 축소
⇒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6	96	100	73	72	98.6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훈련지원비 - 14개 학교 41백만원 ○ 팀창단 지원비 - 5개팀 14백만원 ○ 우수선수육성사업 - 23백만원 ○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 1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훈련지원비 - 14개 학교 41백만원 ○ 팀창단 지원비 - 5개팀 14백만원 ○ 우수선수육성사업 - 23백만원 ○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 17백만원 	100%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훈련지원비 - 17개 학교 32백만원 ○ 우수선수육성사업 - 18백만원 ○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 15백만원 ○ 생활체육육성사업 - 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목별 훈련지원비 - 17개 학교 32백만원 ○ 우수선수육성사업 - 18백만원 ○ 체육대회 입상자 포상 - 14백만원 ○ 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 - 8백만원 	98.63%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거제시 체육진흥조례」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학교체육 육성사업 - 우수선수 육성사업 -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체육진흥 기금을 통하여 우수선수 발굴과 지도자 육성에 기여
-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 등 출전선수에 대한 지원으로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입상자에 대한 포상으로 선수들의 사기 진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학교체육육성사업	32백만원	학교체육 육성을 위한 종목별 훈련비 및 팀창단 지원경비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원 필요	중
② 우수선수육성사업	26.4백만원	각종 대회 출전 및 훈련지원경비로서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단체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 필요	중
③ 대회 입상자 포상	15백만원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선수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 필요	하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조성은 전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자율 감소로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 사용하는 기금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시 재정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139	100%	3,349	100%	3,556	100%
	전입금	200	6.37	200	5.97	200	5.6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821	89.87	3,054	91.19	3,253	91.48
	예수금						
	이자수입	118	3.76	95	2.84	98	2.76
	기타수입					5	0.14
지 출	합 계	3,139	100%	3,349	100%	3,556	100%
	비용자성사업비	85	2.71	96	2.87	72	2.0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054	97.29	3,253	97.13	3,484	97.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기금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은 2016년 일반회계로 전입 예정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2000. 12. 23.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정
- 2005. 9. 8.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
 - ▶ 기금의 용도 추가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 ▶ 시설개선 용자금 한도 제한 →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 2007. 12. 12.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
 - ▶ 결산규정 및 회계 관직 등 지방재정법 준용 규정 마련
- 2013. 12. 6.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문 개정
 - ▶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마련
 -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결산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81	154	124	30	211	144	144	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모범업소 등 지원
 - ▶ 종량제 봉투 지원 : 78개소 3,340매(50ℓ), 7,608천원
 - ▶ (위생)앞치마 지원 : 78개소 1,000개, 10,500천원
 - ▶ 베스트10업소 표지판, 화장지 외 2종 지원 : 300개 6,100천원
 - ▶ 소형찬기 지원 : 2,500개 7,500천원
 - ▶ 즉석판매제조업소 식품표시서 지원 : 12개소 200,000매 6,000천원
- 식중독 홍보활동
 - ▶ 위생 서류철 지원 : 10,000권 20,000천원

- ▶ 손 씻기 자석스티커 : 300개 6,000천원
- ▶ 물티슈 지원 : 300개 1,2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 512명, 23,510천원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교육비 지원 : 2,800명, 7,000천원
- 전통시장 식품위해 매개체 방제사업 : 33개소 11,356천원
- 잘된 점
 -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영업자의 준수 의식 고취 기여
 - 영업자 교육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증진과 서비스 향상 효과
 - 전통시장(고현시장) 내 업소 개별사업장 및 공용장소에 대해 식품위해 매개체 방제사업 지원을 통해 영업주 만족도 및 식품안전도 향상
- 미흡한 점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매년 소모품(종량제봉투, 화장지 등) 지원에 치우쳐 지원품목의 추가 다변화 필요
- 발전방안
 -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영업자 중심보다는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추진 필요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품목을 다각화를 통한 식품의 안전 공급 강화
- 추진 방향
 -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영업자 중심보다는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추진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식품진흥기금 사업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사업간 중복성이 없으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 설치목적의 유효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4	96	71.64	127	124	97.6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6,000천원 12월) ○ 위생교육비 지원 (7,000천원, 2,800명) ○ 모범업소 등 지원(32,600천원, 31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지원 (5,000천원, 17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40,000천원, 1,000명) ○ 식품안전관리 홍보사업(43,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4,592천원, 18회) ○ 위생교육비 지원 (7,000천원, 2,800명) ○ 모범음식점 등 지원(33,292천원, 31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지원 (5,000천원, 17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19,680천원, 492명) ○ 식품안전관리 홍보사업(26,777천원) 	71.89%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4,800천원 12회) ○ 위생교육비 지원 (7,000천원, 2,800명) ○ 모범업소 등 지원 (32,600천원, 30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지원 (4,000천원, 17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4,000천원, 600명) ○ 식품안전관리 홍보사업(48,500천원) ○ 음식경연대회지원(6,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수거 검사비 (3,826천원, 17회) ○ 위생교육비 지원 (7,000천원, 2,800명) ○ 모범음식점 등 지원 (31,708천원, 300개소)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지원 (4,000천원, 170개소)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3,510천원, 512명) ○ 식품안전관리 홍보사업(48,044천원) ○ 음식경연대회지원(6,000천원) 	97.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통시장 방제사업 추진을 통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
-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실시
- 거제시민의날 “음식경연대회” 사업비 지원을 통한 향토음식 발굴 및 홍보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및 시민건강 증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감시원 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전통시장 식품안전, 수거 검사비 지원 ·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관리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식품접객업소 및 식중독예방 등 식품안전에 대한 활동이 폭 넓게 이루어지므로 달성도는 100%로써 그 효과가 높았음.
 - 식품안전행사를 겸한 음식문화경연대회 사업지원을 통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의 발전과 좋은 식단 보급에 역할 정도가 높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고유목적 사업	127백만원	- 식품수거검사, 전통시장방제사업 등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및 모범음식점 지원 등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항이 기금의 본래 목적인 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에 부합하므로 기금 사업은 반드시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309	100%	277	100%	335	100%
	전입금						
	보조금	119.9	38.80	95	34.30	152	45.37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89	61.17	180	64.98	181	54.03
	예수금						
	이자수입	0.1	0.03	2	0.72	2	0.6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09	100%	277	100%	335	100%
	비용자성사업비	50	16.18	26	9.39	124	37.0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79	25.57	70	25.27		
	예탁금						
	예치금	180	58.25	181	65.34	211	62.9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사항 없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설치연도 및 조례제정일 : 2011. 7. 8.(조례 제97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3	429	0	429	752	68	40	2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 추진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잘된 점
 - 기금수입확대를 위한 정기에탁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예탁금 : 329백만원(12개월)
 - 이 율 : 2.05%
- 미흡한 점
 - 허가수수료 및 과태료 외 외부 지원금, 전입금 등 재원조달 실적 없음
 - 기금활용 실적 없음
- 기금의 존치필요성 및 발전방안
 - 거제시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불법광고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이며 도시 미관 향상과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존치 및 기금 확대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0%
'15년	해당없음	해당없음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상황과 현실에 맞는 조례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 인상 추진
-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수입재원확보 적극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이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및 간판시범 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조성 목표액은 달성하였으나 기금운용실적이 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당사항 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11년 7월 조례개정 이후로 수입재원은 수수료수입과 이자 및 기타수입금을 적립하여 75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원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 자금 운용 함으로써 재원 조성 적정성이 매우 우수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149	100%	323	100%	75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3	48.99	149	46.13	323	42.95
	예수금						
	이자수입	1	0.67	2	0.62	4	0.53
	기타수입	75	50.34	172	53.25	425	56.52
지 출	합 계	149	100%	323	100%	752	100%
	비용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49	100	323	100	752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기금 적립을 위한 광고물 수수료 인상 등 조례개정 추진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강제이행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기금적립 노력
- 기금 증액으로 인한 예치금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 지원대상사업 내실화 및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 향후 여유기금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기금조성 및 적립금의 높은 이자 정기예금 예치 등 합리적인 기금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68조
 - 설치목적 : 재해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비용 증당
 - 설치년도 : 1997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559	2,352	2,671	△319	5,240	2,379	1,833	546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에 따른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증가로 2014년에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외 28건(1,593백만원), 2015년에는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차 외 27건(2,671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정비공사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여 농어촌경보시설 확대설치 외 8건(1,336백만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음
- 그리고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 하반기 집행 및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다음연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앞당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겠음
- 국지호우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20	1,593	87.53	1,670	2,671	159.9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100백만원)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책자 인쇄(50백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 구입 (20백만원)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용역 (50백만원, 1식) ○재난감시카메라 영상 화질 개선사업(180백만원)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100백만원)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구축(100백만원, 1식)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공사 (200백만원) ○일운 양화항 방파제 보강공사 (200백만원, TTP 25톤) ○일운 옥상소하천 정비공사 (300백만원, L=200m) ○신현지구 하수박스 정비공사 (300백만원, L=399m) ○사등 청곡소류지 정비공사 (200백만원, L=5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58백만원) ○생활안전 길라잡이 책자 등 인쇄 (40백만원, 4종)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 구입 (26백만원, 인명구조함 외 7종) ○고화질 재난감시카메라 영상시스템 구축(176백만원, 학동종합상황센터 외 8개소)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장비 현대화 사업(56백만원, 40개소)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사각지역 해소사업(30백만원, 4개소) ○망치해수욕장 마을재난방송 시스템 교체공사(2백만원, 1식) ○마을재난방송시스템 장애처리 공사(19백만원, 4개소) ○산양마을 재해위험지 정비 (9백만원, 배수구 설치) ○일운 양화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191백만원, TTP 71EA)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3-3 호선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245백만원, L=395m) ○일운 옥상소하천 정비공사 (211백만원, L=288m) ○사등 청곡소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11백만원, 1식) ○청포(들막)마을 침수 예방 사업(25백만원, L=118m) ○옥포대첩기념공원 호우피해 복구공사(90백만원) ○거제시체육관 비탈면 정밀 안전진단용역(34백만원, 1식) ○덕치천 외 3개소 태풍피해 복구공사(15백만원, L=51m) ○청포마을안길 태풍피해복구 공사(7백만원, L=11m) 	87.53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사마을안길 태풍피해복구공사(11백만원, L=12m) ○농어촌도로307호선 태풍피해복구공사(29백만원, L=59m) ○도시계획도로 소로2-125호선 태풍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14백만원, 1식) ○시도9호선 언양고개 태풍피해공사(163백만원, L=72m 등) ○도시계획도로 대로3-3호선 태풍피해 복구공사(7백만원, L=11m) ○연초 하송마을 태풍피해 복구공사(26백만원, L=11m 등) ○연초 명하마을 태풍피해 복구공사(8백만원, L=11m) ○송정육교 엘리베이터 태풍피해 복구공사(7백만원, 1식) ○호우대비 모터펌프 구입(13백만원, 20EA) ○태풍 나크리 피해 해양쓰레기처리(47백만원, 197.5톤) ○성수아파트 옹벽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6백만원, 1식)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100백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등 책자 인쇄(30백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 구입(20백만원) ○재해침수흔적도 제작용역(20백만원, 1식) ○재난감시카메라 설치 개선사업(40백만원) ○DMB 재난경보시설 설치(40백만원)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수사업(50백만원) ○물놀이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20백만원,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1백만원, 1식)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등 책자 인쇄(29백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물품 구입(19백만원) ○재난감시카메라 설치 개선사업(37백만원, 1식) ○마을재난방송시스템 보수사업(49백만원, 1식) ○물놀이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14백만원, 1식)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18백만원, 1식) ○어항시설 안전관리 시설설치(265백만원, 1식)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 사면정비사업(174백만원, L=288.5m) 	159.94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30백만원) ○ 재해피해지역 응급복구공사 (200백만원) ○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하수박스 보수보강공사 (200백만원) ○ 어항시설 안전관리 시설설치 (300백만원) ○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3-11호선 사면정비사업(200백만원) ○ 둔덕 거림소류지 정비공사 (200백만원, 1식) ○ 사등 오송골소류지 정비공사 (2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덕 거림소류지 정비공사 (422백만원, L=133.0m) ○ 사등 오송골소류지 정비공사 (163백만원, L=18.0m) ○ 사등 청곡소류지 정비공사 (18백만원, L=74.0m) ○ 어항시설 안전관리 시설설치 (186백만원, 44개소) ○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328백만원, 2,428㎡) ○ 시도9호선 태풍피해 복구공사 (405백만원, L=275m) ○ 도시계획도로 소로2-125호선 태풍피해복구공사 (109백만원, L=185.6m) ○ 자동기상관측장비 구축사업 (19백만원, 1식) ○ 농어촌 경보시설 확대설치 (35백만원, 1식) ○ 노후경보시설 전면 교체사업 (194백만원, 1식) ○ 청포 들막마을 침수예방사업 (31백만원, 1식) ○ 거제시종합운동장 도로법면 정비공사(15백만원, L=25m) ○ 거제시추모의집 옹벽정밀안전진단 (19백만원, 1식) ○ 평지교 정밀안전진단 (9백만원, 1식) ○ 간덕천 수해상습지 호안정비공사 (7백만원) ○ 삼거동 마을재난방송 교체사업 (17백만원, 1식) ○ 외포마을 재난 옥내방송설치사업 (14백만원, 1식) ○ 메르스 확산차단을 위한 소독제 구입 (33백만원 1식) ○ 태풍 호우대비 수방자재구입 (15백만원, 1식)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사전 안전조치로 대형재난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생활안전 안전문화운동 장바구니 등 홍보물 30,000부를 제작,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안전문화 정착 유도 및 시민 안전의식 고취
- 재해위험요인 실시간 관측으로 사전 재난대비 및 신속한 대응활동 등 효율적 재난상황관리 수행
-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법면의 공학적 성질조사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적정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제반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
-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 및 홍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 및 대응,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7조	○ 재난·재해의 사전예방 ○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활동 ○ 자연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 재난의 원인분석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예방사업 추진으로 사전대비 ○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 최소화등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및 재해피해 최소화에 기여
-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15%) 적립을 통한 재난예방사업 지속 추진 가능
-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재난예방사업 추진을 통한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결산검사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지적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외 27건	2,671백만원	○ 재난사건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사업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기금 설치목적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조성이 적정하며, 중장기적으로도 재원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7,006	100%	7,152	100%	7,911	100%
	전입금	1,409	20.11	1,563	21.85	1,677	21.20
	보조금	300	4.28	325	4.55	510	6.45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089	72.64	5,091	71.18	5,559	70.27
	예수금						
	이자수입	208	2.97	173	2.42	164	2.07
	기타수입					1	0.01
지 출	합 계	7,006	100%	7,152	100%	7,911	100%
	비용자성사업비	1,850	26.40	1,466	20.49	2,667	33.71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113	1.58		
	예탁금						
	예치금	5,091	72.67	5,559	77.73	5,240	66.2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5	0.93	15	0.20	4	0.05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최근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태풍, 해일, 국지적 집중호우 등 발생빈도 증가 및 대형화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난·재해예방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존치가 필요
-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재해피해 사전예방 및 최소화 추진
-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재난예방사업 및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등에 관한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 설치년도 : 2004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4년말 조성액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16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47	487	614	-127	720	508	205	303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실적			추진내용	비고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계	206	614	298.06		
한내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50	475	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내마을 태양광발전시설설치사업 지원 	
석포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50	74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포마을 양산항도립잠방 히트펌프설치사업 지원 • 석포마을 위험지역 가드레일 설치공사 지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	54	25	4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내·석포마을 전기 및 전화요금 • 한내·석포마을 TV유선비 •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용품 지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52	40	76.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감시원 인부임 •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급식비 	

○ 잘된 점

-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하여 주변마을주민에 대한 생활환경개선(소득증대사업)및 주민불편 사항 해결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사기양양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미흡한 점

- 주변지역 마을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최초계획에 대비하여 집행실적이 과다, 과소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집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0	167	119.29	206	614	298.0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한내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20백만원)	○ 한내마을 체육공원 급수공사지원 사업 (16백만원)	80%
	○ 석포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20백만원)	○ 석포마을 생산황토짚질방 운영비지원 사업 (60백만원)	300%
'15년	○ 한내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50백만원)	○ 한내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지원 사업 (475백만원)	950%
	○ 석포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사업 (50백만원)	○ 석포마을 생산황토짚질방 히트펌프설치지원 사업 (56백만원) ○ 석포마을 위험지역 가드레일설치지원 사업 (18백만원)	14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한내마을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주민요구사항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실질적 전기요금 절약효과와 마을의 복지증진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석포마을 생산황토짚질방 히트펌프설치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짚질방의 과도한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운영의 정상화를 통하여 짚질방을 찾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편의를 제공 마을소득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마을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 기금 설치 목적 》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 소득증대사업 ○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함에 따라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	지적사항 없음.
	'14년	지적사항 없음.
	'15년	효율적인 기금관리 및 운영 개선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지적사항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5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원의 성격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의 10%,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 음식물 납입필증 5%, 이자수입 등
- 재원의 규모
 - 봉투판매 및 반입수수료 10%, 음식물 납입필증 5% : 471백만원(시설사용 기간 중 계속적립)
 - 공공예금 이자수입 : 16백만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존치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히 사업 추진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금 존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향후조치 계획
 -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가급적 선심성 사업지원은 억제하고, 사업내용이 부적합하거나 기대효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사업 등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조치
 - 기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통한 주민지원 사업 선정하는 등 기금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별, 가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금 운영
- 건의사항 : 기금지원사업의 종류 확대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수 입	합 계	643	100%	1,014	100%	1,334	100%
	전입금	353	54.90	436	43.00	471	35.3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81	43.70	563	55.52	847	63.49
	예수금						
	이자수입	9	1.40	15	1.48	16	1.20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43	100%	1,014	100%	1,334	100%
	비용자성사업비	41	6.38	137	13.51	585	43.8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38	5.91	27	2.66	29	2.18
	기본경비	1	0.15	3	0.30		
	예탁금						
	예치금	563	87.56	847	83.53	720	53.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